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일심회’ 피의자, 조선·중앙에 손배소 “실명·사진·인적사항·회사정보 악의적 공개”

이른바 ‘일심회 사건’ 피의자 가족들이 5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각각 9,000만 원씩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의 처 구 모 씨,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의 처 김 모 씨, 손정목 씨의 처 김 모 씨 등 3명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구속자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구속자들의 가족과 회사를 게재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중앙일보 또한 구속자들의 실명과 사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와 관련해 “간첩, 간첩단 등으로 표현해 구속자들에 대해 간첩 이미지를 씌우고 확정된 간첩인 것처럼 보도하는 한편 가족들의 실명과 이력까지도 공개해 간첩 가족으로 낙인 찍었다”며 “또한 회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가족들의 경제생활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이 통발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99년 5월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동료 선원을 감금한 뒤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10월 26일자)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 전 위원에 대한 친북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과 중앙은 이 같은 보도를 통해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명옥 언론인권위원장이 맡았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편집국 한 간부는 “개인들이 간첩혐의로 송치됐기 때문에 간첩, 간첩단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며 “보도의 정당성 여부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6년 12월 7일

청와대, 조선·문화 ‘일심회’ 보도 정정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명예훼손·국민혼란”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일심회 의혹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고 법원이 28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지난 10월 28일자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력>, <간첩단 발표 바로 다음날, 왜 김 원장이 사의를...>, <386 간첩단 ‘수사도중 물러나는 국정원장’>이라는 기사와 같은 달 30일자 <‘국정원 내부 갈등 불거지나’, ‘386 간첩사건 수사과정 김 원장, 일부 간부 마찰’>, <‘압력설 맞다’vs ‘아니다’/사건 보도직후 사의표명>, <수그러들지 않는 국정원장 사임 압력설, 청와대 이틀 만에 “황당한 얘기”> 등의 기사 6건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들 기사에 대해 “김승규 원장이 지난 10월 25일 대통령

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386비서진’들을 비롯한 여권의 386들이 ‘일심회’ 피의자들과 교분이 깊다고 전제해 마치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있는 것처럼 막연한 추측이나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로 허위보도했다”며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혼란과 대립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즉각 정정보도하라”며 “재판부의 정정보도 결정이 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엔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문화일보의 10월 27일자 <노 정권 ‘친북기조’와 ‘386 간첩단’>, <핵실험 후 청·통일부 - 국정원 충돌>, <2007년 대선까지 붉게 물들어려한 ‘386 간첩단’>라는 기사와 30

일자 <김 국정원장 사퇴의 전말>, 31일자 <김승규 원장 측 “타의에 의한 사퇴” 청 외압설 논란 증폭>, <386 간첩단 수사하는 김승규 국정원 흔들지 말라> 등의 기사 6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대통령비서실은 문화일보에 대한 소장에서 “국정원 수사 피의자들과 수시로 교류하거나 친분관계에 있는 청와대 비서진이 누구인가 밝혀야 하고,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보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앞서 언론중재위에 이들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지만 결렬돼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2006년 12월 28일

‘미자’ 차화연 씨 여성월간지 상대 승소 인터뷰 거절당하고 인터뷰 실은 <여성조선>, <주부생활>에 배상판결

1986년작 TV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여주인공 ‘미자’역으로 유명한 차화연 씨가 인터뷰를 거절했음에도 자신에 대한 허위 기사를 내보낸 여성 월간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9일 차화연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성월간지 <여성조선>과 <주부생활>이 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1986년 <사랑과 야망>으로 연기생활 최고점에 다다랐다가 출연히 연예계를 떠난 차 씨가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근황을 보도한 것. 지난해 2월 SBS에서 <사랑과 야망>을 다시 만들어 방송하자 원작 드라마의 여주인공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당시 이들 여성지는 차 씨가 ‘20년 만에 입을 열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차 씨는 인터뷰를 거절했음에도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며 잡지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의 기사 및 광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잡지들이 차 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과 연예계를 떠난 차 씨가 더 이상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는데도 피고들은 제목과 그 표현에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이 원고와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고, 인터넷에 이 기사를 인용한 글이 다수 게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연예계를 은퇴한 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적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으며,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차 씨가 주장했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이 원고에 대해 주로 긍정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고, 기사의 사진들은 이미 공개돼 있거나 원고의 동의를 바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여성조선>, <주부생활>과 함께 소송을 당한 <여성동아>의 보도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정도로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오마이뉴스 2007년 1월 30일

홍보처 ‘신문사실’ 반론보도 청구 패소 서울고법 “의견·비평은 반론대상 안 돼”, “동아일보에 1,889만 원 지급하라” 판결

국정홍보처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언론사에 1,889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 금액은 언론사가 1심 판결 후 국정홍보처의 반론을 실어준 것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 결과를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을 광고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홍보처는 1,889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동아일보는 ‘국정홍보처, 당사 상대 반론보도 청구 패소’라는 기사를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언론 보

도 가운데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과거 환송 취지에 따라 나온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2001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일부 언론이 편향·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그해 7월 4일자 기사와 사실을 통해 “사실에 한 번 쫓아 언론보도를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보도와 비판을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보도했다. 국정홍보처는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1심 법원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그해 10월 25일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그 뒤 동아일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이 사실 전달보다는 의견 표명에 있을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날 “문제의 기사들은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25일

대법 "이종기 변호사 명예훼손 인정" MBC에 7,000만 원 지급 판결

대법원 1부는 25일 대전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종기 변호사가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비리의 단순 폭로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뉴스와 PD수첩에서 이 변호사가 관감사들에게

항응을 제공하고 비도덕적인 사건수임 및 부당한 변론 활동을 했으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보도한 것은 모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7년 1월 26일

기장 총회, 비리 의혹 보도 YTN에 강력대응 방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비리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또 총회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총회 임직원을 고소한 관계자들에게 대해서는 교단 차원에서 징계기로 결정했다.

기장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YTN의 불법적인 취재 방식과 무책임한 논조는 사회적 공신인 언론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도 언론의 횡포에 의해 무고하게 고난 받아

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총회에 따르면 YTN 취재진은 총회 본부 임직원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예고 없이 사무실에 침입, 사건과 관련 없는 문서들을 촬영했다. 총회는 또 "편집 과정에서 총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돈다발 등의 장면을 삽입해 마치 부정한 돈이 오간 것처럼 비치게 한 점은 명백한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기장 총회는 경찰 수사와 관련,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교단은 깊고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18일 총회는 대전에서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 7인 징계위원회를 구성, 총회 임직원 등을 고소한 관련자 등을 교회법으로 징계기로 했다.

총회는 이번 사태가 기장 교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고소를 당한 총회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06년 12월 19일

대전방송, 학교급식 관련 방송 '손배소' 승소

학교급식 문제를 기획물로 다뤘다 급식납품업자와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대전방송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은 대전 모 급식업체 대표 김 모 씨(52)가 대전방송(대표 이 모 씨)과 대전 모 여중 교사 권 모 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전방송이 지난 2005년 제작, 방영한 '학교급식,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획취재보도물은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전방송의 보도내

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데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방송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의) 제작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제를 구별해 방영했고 원고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없어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이번 사건 방송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 권 씨가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전반적인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의견을 밝힌 것이지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 모 여중·고의 급식위탁업체인 대전 A도시락 대표 김 씨는 지난 2005년 말 대전방송이 방영한 학교급식 관련 기획물이 자사의 신용도와 명예를 훼손해 영업상 피해를 끼쳤으며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대전방송은 지난 2005년 학교급식의 다양한 문제점을 취재, 제작해 '현장리포트'란 프로그램을 통해 3부작으로 방영했었다.

뉴스 2007년 1월 24일

현직 판사, 문화일보 상대 1억 원 손해소 조미옥 판사 "개인병력, 허위사실 확인없이 보도", 문화 "취재한 내용 보도했을 뿐"

현직판사가 자신의 재판 연기 사유를 보도한 문화일보와 기자에 대해 당사자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50부 조미옥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판사였던 지난 15일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포스코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몸이 아프다. 혈압이 높아져 선고를 연기했다"고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15일자 7면 〈판사 "몸이 아파서..."〉에서 "조 판사는...선고 공판을 돌연 연기했다"며 "조 판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태평양 전쟁 유족 사건의 경우 심리할 부분이 더 있다고 판단돼 변론 재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는 이어 조 판사가 원고들에게 선고 연기를 통보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고 연기는 원래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통보하는 것이지 미리 통보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판사가 최근

혈압이 높아져 의사들이 휴식을 권유했고, 이 때문에 휴직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는 이와 함께 "한편, 조 판사는 지난해 3월 아파트를 무단 증축했다며 구청이 2차레에 걸쳐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같은 원고의 동일 사건에 대해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상반된 결정을 내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며 "당시 조 판사는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연락을 끊고 휴가를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조 판사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했다가 이후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소장에서 '혈압이 높아져 휴직까지 고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가족도 모르도록 한 부분임에도 원고의 동의도 없이 대법원 관계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보도를 했다"며 "수차례 개인병력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부탁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한 구청의 이행강제금 적정성에 대한 두 차례의 상반된 판결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상반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적인 확인 없이 보도할 성질의 내용이 아니었으며 보도 전에 정식 인터뷰조차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이 문제가 돼 휴가신청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문제되기 10여 일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휴가를 간 게 아니었다"며 "이 부분 역시 본인에게 충분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마지막으로 "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자신의 어머니가 '구설수에 올랐다', '무단으로 갑자기 휴가를 떠나 버렸다',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내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판사로서는 어려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문화일보 노운정 기자는 "취재한 내용에 따라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7년 2월 22일

1일 방문자 30만 이상 포털 제한적 실명제 실시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의 포털과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나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명이나 필명을 써도 문제가 없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

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제공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는 포털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닷컴 등 16개이며 인터넷 언론은 동아닷컴과 조선닷컴 등 9개사이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07년 2월 23일